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80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김성원 · 고동진 · 김선교
이종배 · 이인선 · 박성훈
정동만 · 송석준 · 배현진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실정임. 특히,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해 경제적 빈곤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람”을 “사람(제6조의3 및 제8조의6에 따라 예우를 받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우”를 “예우(제6조의3 및 제8조의6에 따라 그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예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8조의6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 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u>사람</u> 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다.	제3조(적용 대상자) ----- ----- <u>사람</u> (제6조의3 및 제8조의6에 따라 <u>예우를 받는 참전유공자의 배</u> <u>우자를 포함한다</u>)----- -----.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u>80세 이</u> <u>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u>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u>다음 각</u> <u>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u> ---- ----- ----- -----. 1. <u>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u> 2. <u>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배우자를 말한다) ② ~ ⑤ (생 략)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 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 ----- ----- -----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 든 <u>예우</u>를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 ----- ----- ---<u>예우(제6조의3 및 제8조의6 에 따라 그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예우를 포함한다)</u>----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의3 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8조의6 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예우를 하지 <u>아니한다.</u></u>
---	---